

2024-2026년
ESG KOICA-청년중기봉사단
파견사업(Governance)
봉사단 모집 본공고(안)
- 2차파견 -

2024년 10월

■ 모집개요

- ◆ 모집인원: 총 55명(국가별 13~14명)
- ◆ 활동국가: 캄보디아, 동티모르, 피지, 르완다
- ◆ 활동기간: 2025년 2월 중 ~ 2025년 6월 (총 5개월)
- ◆ 활동구분: 국내 활동(해외 활동 전, 후/ 총 1개월), 해외 활동(4개월)
- ◆ 교육일정: 2025년 1월 중 (단, 교육은 국내 활동에 포함되지 않음)
- ◆ 활동내용: 청년들과 함께하는 거버넌스 활동
 - 한국&현지 청년 팀 구성, 파견 현장 수요에 따른 교육 분야 개발 / 평화 인식 제고 관련 액션플랜 기획 및 실행
 - 국내외 활동 홍보 및 SNS 운영
 - 교육 및 홍보자료 제작 및 번역
 - 영상 제작 및 편집
- ◆ 모집 분야: 일반교육 (초등 영어, 수학), 보건, 컴퓨터, 청소년 개발, 국제개발, 사회복지, 체육, 태권도, 음악, 미술, 현지어(캄보디아, 르완다, 피지, 동티모르), 평화 인식 제고
- ◆ 프로그램 구성
 - ① 캄보디아 (유초등교육 지원)
 - 유초등학교 기초 교육 운영 계획 수립
 - 영어, 수학, 음악, 미술 등의 기초학력 증진 활동
 - 유초등학교 학생, 교사 대상 세계시민교육
 - ② 동티모르 (초중등교육 지원)
 - 수학, 컴퓨터, 스포츠, 태권도 교육 운영 계획 수립
 - 초등학교 학생 대상 수학, 컴퓨터, 체육, 태권도 등의 학력 증진 활동
 - ③ 피지 (교육지원)
 - 초중고학교 학생 대상 컴퓨터 교육과 예체능 활동 계획수립
 - 컴퓨터 교육과 예체능 교육 증진 활동
 - 초중고학교 학생 대상 세계시민교육
 - ④ 르완다 (유초등교육 & 평화지원)
 - 유초등학교 학생 대상 기초 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 증진 활동
 - 한국, 르완다 청년 간의 협업을 통한 평화 인식 제고(제노사이드 관련) 증진 활동
 - ⑤ 공통활동
 - 청년 거버넌스 컨퍼런스/워크숍 기획 및 운영
 - 유튜브 등 영상미디어 제작 및 홍보
 - SNS 연계를 통한 미디어 캠페인 진행
- ◆ 지원사항
 - ① 활동비 지급(국내 활동 중/ 총 105만원(세전)/ 해외 활동 전·후 분할 지급))
 - ② 생활비 지급(해외 활동 중/ 국별 평균 \$655(4회 × 월별)/ 주거비 별도 지원)
※ 단, 생활비의 경우 파견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예정
 - ③ 해외 활동의 제반경비(항공료, 비자발급비, 보험료, 의료보안지원 서비스, 예방접종비, 안전/활동 물품 등) 일체 지원
 - ④ KOICA 개발협력 커리어 센터와 연계된 취업 지원 서비스 이용 가능
 - ⑤ 지구촌나눔운동 NGO봉사단(해외파견간사) 및 YP 지원 시 우선 선발
 - ⑥ 단원 활동 증명서 발급

- 모집인원: 55명(캄보디아/동티모르/피지/르완다 각 13~15명)
- 활동기간: 2025년 2월 ~ 2025년 6월 (국내활동 1개월/해외활동 4개월)
※ 교육기간은 활동 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활동국가(분야): 캄보디아(초등교육 지원), 동티모르(초등교육 지원),
피지(초중등교육지원), 르완다 (유아교육 & 평화 지원)
- 지원자격:
(공통자격)
 - 1) 봉사정신이 투철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지원서 마감일(2024.11.11.) 기준 지원자 생년월일 적용)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녀
 - 2) 남성은 군복무 미필자도 가능 (군복무 필 또는 면제 기준 미적용)
 - 3) 우리 정부와 파견국 출입국 관리기준 및 해외감염병 예방수칙 등에 부합하는 자
 - 4) 해외봉사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 가능한 자
 - 5) 국가 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6) 르완다 필수 지원 조건: 학사 학위 소지자 또는 소지 예정자(졸업 예정일이 확인되는 서류 발급이 가능한 자)

(우대사항)

- 1) 사회배려층 대상자
- 2) 비수도권 지방인재
- 3) 고졸자,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 4) 활동국 현지 활동 경험자 및 뛰어난 의사소통 능력자
- 5) 디지털 활용 능력자 및 ODA 자격증 소지자
- 6) 일부 직종 경력 및 전공자: 활동국 현지 활동 경험, 디지털 활용 능력자
- 7) 르완다 파견자의 경우 아프리카 지역학, 제노사이드, Peace Building 활동 관심자

- 선발기준:
 - 1) 국제개발협력 분야 장기 비전을 통한 개발협력 활동가로서의 성장 가능성
 - 2) 지원서 작성 내용의 성실도, 진정성 및 참신성
 - 3) 4개국 지역사회와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이해도
 - 4) 참여 동기 및 적극성, 창의성 등 품성
 - 5) 팀제 활동에 필요한 특기, 기술, 장점
 - 6) 활동국 현지 활동 경험, 디지털 활용 능력자

○ 심사 가산점 부여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특례에 따라,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에도 수급 자격이 유지됩니다.

정부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가 있는 가구에 대한 수급자 선정기준 특례 대상에 'KOICA 해외봉사단 참가자 추가' 적용 (시행일 2023. 10. 6.~)

<가산점 부여 기준>

□ 근거 : 해외봉사단파견 규정 시행세칙

구 분	가산점		비고(증빙자료)
	서류	면접	
사회 배려층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5	5 기초생활수급자확인서
	장애인	5	5 장애인증명서
	차상위계층	5	5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한부모가족	5	5 한부모가족증명서
	다문화가족	5	5 국적취득증명서
	6개월이상 장기실직자	5	5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
	여성가장	5	5 가족관계증명서
	보훈보상대상자	5	5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국가유공자(자녀)	5	5 국가유공자(자녀)증명서
	자립준비청년	5	5 재원증명서 및 보호종료확인서
기타	고졸자,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비수도권 지역인재	3	- 최종학력증명서

- 지원절차: 지구촌나눔운동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지원서 양식 작성 후 이메일 접수 (gcsv@gcs.or.kr) : 지원서 양식 추후 공지
*이력서 개별 서류로 첨부할 것(ZIP 파일 제출 금지)

- 전형절차

지원서 접수	1차전형 (서류전형)	2차 전형 (면접, 적합도 검사 전형)	3차 전형 (신체검사)	최종전형
- 온라인 접수 2024.10.29.(화) 12:00~13:00		- 적합도 검사 - 면접 전형	- 신체 검사 - 신용 조회	- 최종심사 및 국가배정
24.10.28(월) ~24.11.11.(월) 23:59(KST)	2차 전형 대상자 발표 24.11.22(금)	24.12.03(화) (1차 통과자 대상 개별 통보)	24.12.10(화) ~25.01.14(토) (2차 통과자 대상 개별 통보)	대상자 발표 24.12.23(월)

* 상기 일정은 지구촌나눔운동 및 협력국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별도 공지합니다.

[ZOOM 온라인 설명회 참가 신청]

일시: 2024.10.29.(화), 12:00~13:00(KST) (참가접수마감 2024.10.28(월) 23:59까지)

참가신청 링크: <https://forms.gle/uSwneKwZzmtg81uW7>

당일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 예정 <https://www.youtube.com/@wfk4461/featured>

○ 교육일정: 2025년 1월 4일~ 1월 13일 (장소: KOICA 서울교육원, 10일간 대면 교육 필수 참석)

○ 지원내용: 활동시 지원

1) 국내활동비 및 해외활동 생활비 지급 (봉사단원 지침 준수기준)

활동비(국내 활동 중/ 총 105만원(세전)/ 해외 활동 전·후 분할 지급)

생활비(해외 활동 중/ 주거비 별도 지원)

- 캄보디아: 월 \$590 (4회*월별)
- 동티모르: 월 \$700 (4회*월별)
- 피지: 월 \$630 (4회*월별)
- 르완다: 월 \$700 (4회*월별)

※ 단, 생활비의 경우 파견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예정

2) 해외활동의 제반경비(항공료, 비자발급비, 보험료, 의료보안지원서비스, 예방접종비, 안전/활동 물품 등) 일체 지원

3) KOICA 개발협력 커리어 센터와 연계 취업 지원 서비스 이용 가능

4) 지구촌나눔운동 NGO봉사단(해외파견간사) 및 YP 지원 시 우선선발
5) 단원 활동 증명서 발급

○봉사단 지원 관련 문의

대표메일: gcsv@gcs.or.kr

전화: 02-6272-7678

상담시간: 평일 10시 ~ 16시(점심시간 12시 ~ 13시 제외), 공휴일 휴무

담당자: 김수진 AM

[붙임 1] 비수도권 지역인재 안내

※ 기재부「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의 「비수도권 지역인재 및 이전지역 인재 범위」를 준용

1. 비수도권 지역인재 범위

- 가.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나. 2개 이상의 대학 졸업의 경우 지원자가 제출한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판단

2. 비수도권 지방대학의 범위

- 가. 「고등교육법」제2조의 각 호에 따른 학교로서 본교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기술대학, 각종학교'
나. 「고등교육법」제24조 상의 '분교'로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예시>

- ▶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 지방대학에 해당
 -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
- ▶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 : 지방대학에 해당하지 않음
 -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제24조상의 분교가 아님

※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서 본·분교 여부 조회 가능
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경기·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
라.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 제3항에 의해 설치된 과학기술대학

3.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예시)

- 가. 본교가 서울·경기·인천에 소재하는 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경기·인천 지역대학
나.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다. 사이버대학, 디지털 대학 등 「평생교육법」 상의 평생교육시설
라.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분교

4. 그 외의 지방인재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
나.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다. 대학원 및 사이버·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 학점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5. 지방대학 졸업여부 검증

- 가. 졸업증명서를 제출토록 하여 지방대학 졸업자임을 검증하되,
나. 분교인 경우 졸업증명서에 본교와 분교의 구분이 없는 관계로 분교 졸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학교장확인서 등)를 제출받아 검증

[붙임 2] 사회적배려층 준용 관련법 및 제출서류 안내

※ 해당자는 지원서 제출기간 내 (5.27(월) ~ 6.12(금), 23:59) 지원서 작성 시 업로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특례에 따라,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에도 수급 자격이 유지됩니다.

정부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가 있는 가구에 대한 수급자 선정기준 특례 대상에 'KOICA 해외봉사단 참가자 추가' 적용 (시행일 2023. 10. 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해당하는 자

관련법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제출서류	1. 수급권자 -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 1부(행정복지센터 발급) 2. 차상위계층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자활근로자확인서(행정복지센터), 장애수당대상자확인서(행정복지센터) 중 1부

2. 「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자

관련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제출서류	1. 장애인증명서 1부(행정복지센터 발급)

3.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해당하는 자

관련법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미혼자{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제출서류	1. 한부모 가족 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수급자확인서 1부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자

관련법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적취득증명서 1부 (국적 취득시) 2.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1부 (부 또는 모, 해당자에 한함)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에 따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관련법	<p>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기실업자”란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후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직등록확인서 2.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서

6.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취업취약계층” 중 여성가장에 해당하는 자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無	• 가족관계등록부 • 부모가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	
배우자 有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부
	질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자

관련법	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2.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3.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 ②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37조 및 제41조에 따른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제37조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41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출서류	1.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자

관련법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5.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②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할 경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명에게만 실시한다. ③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제32조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34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출서류	1. 국가유공자(자녀) 증명서

9. “아동복지법”에 해당하는 자

관련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아동복지시설”이라 함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14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출서류	1. 위탁 가정 및 아동보육시설 재원증명서 또는 보호종료확인서 중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